

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(안)」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□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5. 11. 7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□ 제안이유

- 우리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당산근린공원 재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당산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 운영하고자 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(안)을 지방재정법제33조, 동법시행령제84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임.

## □ 주 요 골 자

### 《주차장 건설계획》

- 사 업 명 : 당산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
- 위 차 :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
- 공원면적 : 11,124㎡ (3,364평)
- 주차장건설 대지면적 : 2,696㎡ (815평)
- 주차장건설 연면적 : 5,393㎡ (1,631평)
- 구조 및 주차면수 : 철근콘크리트 자주식 지하2층 "173"면
- 건 설 비 : 8,304백만원(시비 4,152백만원, 구비 4,152백만원)

## □ 관 련 법 규

- 지방재정법제33조 · 같은법시행령제84조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

## □ 검 토 의 견

- 당산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건설은 당산근린공원 재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공원조성 사업 전 당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긴급사태 발생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통행권 확보와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 입니다.

○ 건설개요를 말씀드리면

위치는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번지로 지목은 공원이고 소유자는 영등포구이며 공원면적은 11,124평방미터(3,364평), 주차장건설 연면적은 5,393평방미터(1,631평) 구조 및 주차면수는 철근콘크리트 자주식 지하2층 173면입니다.

건설비는 총83억 4백만원 이며, 시비와 구비 50%로 각 41억 5천 2백만을 투입하며, 공사기간은 2006.1월부터 2007. 6월까지 입니다.

○ 당산근린공원 주변은 다가구주택은 물론 구청, 영등포병원 등 업무용 빌딩이 밀집되어 있어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었으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·정차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이 적체되곤 하며, 동 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며,

○ 또한 그동안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과도한 보상비 지출 등으로 투자효율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원조성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 신·개축 공사와 병행한 주차장 건설은 긍정적인면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그러나 공원에 구청 지하상황실과 지하철이 인접하여 있어 지하굴착 공사 중 유념해야 할 문제점으로 검토 되었습니다.

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,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계획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11. 10

보고자 : 이 남 식